



목 포 시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696호 2025. 6. 2. (월)

고시 · 공고

-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----- 2
- 목포시보안업무관리요강 일부개정안 발령 ----- 5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홍보과 ☎ 061-270-8539

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

「지방자치법」제169조에 따라 목포시 의회에서 의결된 「한국 기독교 선교
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5월 28일

목 포 시 장

1. 고 시 명 :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

2. 주요내용

가. 명 칭 :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

나. 구 성 :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자치단체(8개 지방자치단체)

다. 주요사업

- 1) 기독교 선교기지유적에 대한 공동조사·연구·학술대회 등
- 2)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자료 및 연구자료 공유
- 3) 세계유산 등재 추진 조직 구성 및 운영·지원
- 4) 세계유산 관련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건의
- 5) 자문위원회 운영, 언론보도 및 홍보
- 6) 그 밖에 협의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라. 임원구성 : 회장 1명, 부회장 1명

마. 회 비 : 연회비(금10백만원)

붙임 규약 1부. 끝.

[붙임]

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

제1조(명칭) 본 회는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약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69조에 따라 ‘한국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기독교 선교기지유적에 대한 공동조사·연구·학술대회 등
2. 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자료 및 연구자료 공유
3. 세계유산 등재 추진 조직 구성 및 운영·지원
4. 세계유산 관련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건의
5. 자문위원회 운영, 언론보도 및 홍보
6. 그 밖에 협의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4조(구성) ① 2021년 국가유산청 ‘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발굴 연구용역’ 결과에 명시된 자치단체 중 협의회 목적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(대구중구, 광주남구, 청주시, 공주시, 전주시, 김제시, 목포시, 순천시)로 구성하며,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

② 협의회에 가입·탈퇴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서로 요청하고, 회의에서 가입·탈퇴여부를 결정한다.

③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부단체장 또는 회원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부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, 회원 대리 참석자는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.

제5조(권리와 의무) ① 회원은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
②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고, 의견을 개진하거나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 부단체장이나 업무담당 간부가 대리할 수 있다.

③ 회원은 협의회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회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.

④ 회원은 분담금을 소속 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6조(임원) ① 협의회는 회장 1명, 부회장 1명과 회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.

1. 회장의 선임은 정기회의에서 합의 추대함을 원칙으로 하며,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무기명투표로 선임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2차 투표로 결정한다.

2. 부회장은 회장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,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회의는 회원별 윤번제로 실시한다.

1. 정기회의 : 연 2회

2. 임시회의 :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할 때

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사무소) 협의회는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 자치단체에 둔다. 단,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해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·관리 할 수 있다.

제9조(자문위원)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10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는 소속 자치단체의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하며, 회장 소속 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장이 회의를 주관하고 참석자의 범위를 사전에 논의하여 결정한다.

제11조(경비부담) ① 각 회원 자치단체에서 매년 10,000천원씩 부담하여 공통경비로 관리하며, 사무소 지정 은행계좌로 납부한다.

② 공동사무 처리,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공통경비를 사용한다.

③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필수적인 추가재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협약하여 분담할 수 있다.

제12조(수당 등)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회계원칙) 회계연도를 비롯한 모든 회계 처리는 국가회계법(지방회계법)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준용규정)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.

목포시보안업무관리요강 일부개정안을 이와같이 발령한다.

2025년 6월 2일

목 포 시 장

목포시보안업무관리요강 일부개정안

목포시보안업무관리요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은 [별표 1]에 따른다

목포시보안업무관리요강(별표)를 신설한다

목포시보안업무관리요강(별표) [별표 1]을 다음과 같이 한다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비밀·암호자재 관련 자료 보관 및 이관

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(관리부철)	보관기간
비밀접수증(철) 비밀열람기록전(철) 배부처	비밀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에서 분리 후 5년간 보관
비밀관리기록부 비밀 접수·발송대장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보호지역 출입자명부	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긴 후 기존 관리부철 5년간 보관
서약서	비밀취급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
암호자재 증명서(철)	해당 암호자재 반납·파기 후 5년간 보관
암호자재 점검기록부	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 보관

※ 보관기간 경과 후 다음연도 중 기록물관리기관 이관